

의안
번호

304

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06. 04.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소형준의원 외 10명
- 나. 의안번호 : 제304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05. 14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05. 28.

2. 제안이유

-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을 규정(안 제4조)

나.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마련(안 제5조)

다.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 장려에 필요한 포상 근거 마련
(안 제6조)

라.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마련
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제9조의2, 제13조,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05. 17. ~ 2024. 05. 22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~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, 위기가구 발굴 노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~제5조는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을 정하고, 위기가구 발굴 등 협력 대상자의 소요 경비 및 활동장려 물품 등의 지원을 명시함.
- 안 제6조~제7조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포상대상을 규정하고,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 정보 접근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포상 제외 규정을 마련함.
- 안 제8조는 제도 운영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관협력과 지역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수원 세 모녀 사건 ('22년 8월), 서대문 신촌 모녀 사건 ('22년 11월), 성남 모녀 사건 ('23년 1월) 처럼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인 선택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.
- 또한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¹⁾은 사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,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1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"위기가구"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 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-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

제14조(민관협력)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을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)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